증평 대성베르힐리오파크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의 방문 및 당첨 세대 방문 시, 준수사항

(당첨자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세대 방문이 제한됩니다)

- 당첨 세대 방문시,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37.5도가 넘을 경우 입장 제한)
- 손 소독제 사용, 체온 측정 등 감염 예방 수칙 적극 협조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세대 개방 및 서류 접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세대 개방 및 서류 접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1.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으로 (구)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주택이며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를 일반 공급하는 국민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내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 임대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 기간에 있는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본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일은 기존 임차인 중 미퇴거 세대에 대해서는 퇴거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임차인 및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18.) 현재 증평군 및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인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증평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년 05월 사용승인을 득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이며, 국민주택기금(84형 세대당 67,000,000원), (77형 세대당 60,000,000원,) (74형,59형 세대당 58,000,000 & 46,000,000)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아파트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또는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되어야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또는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되어야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되어야함 (예)전혼자녀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jp.verthil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 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1. 01. 28. (목)	2021. 01. 29. (금)	2021. 02. 01. (월)	2021. 02. 05. (금)	2021. 02. 17. (수) ~ 2021. 02. 19. (금) 3일간 (시간 : 10 : 00 ~ 16 : 00)
방 법	인터넷 청약 (08 : 00 ~ 17 :30)	인터넷 청약 (08 : 00 ~ 17 :30)	인터넷 청약 (08 : 00 ~ 17 :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방문 계약
장 소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충청북도 증평군 북부두름길 80 단지내 상가 2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9.29.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민원과 - 2829 (2021.01.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북부두름길 80
■ 대지면적 : 42,477.00㎡
■ 주차장 높이: 2.3m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 , 지상18층, 13개동 989세대 중 우선분양전환 388세대, 기타 21세대 제외한 5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61세대(일반기관추천 29세대, 다자녀특별공급 5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17세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40세대, 노부모특별공급 17세대)]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문고
■ 입주시기 : 2021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01 .18 (월)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세대별면적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합계	세대별대지지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저층우선배정세대
				전용	주거공용	소 계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소계			
국민주택	2021000005	01	059.9500E	59.9500	18.2811	78.2311	29.7587	107.9898	35.0782	14	28	55	8	19	124	154	278	4
		02	074.9688D	74.9688	31.7276	106.6964	37.2140	143.9104	43.8661	5	11	22	3	7	48	63	111	2
		03	077.7942C	77.7942	23.3078	101.1020	38.6165	139.7185	45.5193	3	7	14	2	5	31	41	72	3
		04	084.9971A	84.9971	30.4713	115.4684	42.1921	157.6605	49.7339	4	9	18	2	6	39	48	87	10
		05	084.9635B	84.9635	33.0604	118.0239	42.1753	160.1992	49.7143	3	3	8	2	3	19	13	32	4
	합계									29	58	117	17	40	261	319	580	23

■ 공급 금액 (단위 : 원)

주택형 (타입)	공급세대수	층수	분양가격	계약금(계약일 10%)	중도금(계약 후 15일 20%)	잔금(계약 후 30일 70%)
059.9500E	278	1층	156,600,000	15,660,000	31,320,000	109,620,000
		2~ 3층	159,600,000	15,960,000	31,920,000	111,720,000
		4층	162,600,000	16,260,000	32,520,000	113,820,000
		5~10층	165,600,000	16,560,000	33,120,000	115,920,000
		11~ 17층	168,600,000	16,860,000	33,720,000	118,020,000
		18층	198,600,000	19,860,000	39,720,000	139,020,000
074.9688D	111	1층	221,400,000	22,140,000	44,280,000	154,980,000
		2~ 3층	224,400,000	22,440,000	44,880,000	157,080,000
		4층	227,400,000	22,740,000	45,480,000	159,180,000
		5~10층	230,400,000	23,040,000	46,080,000	161,280,000

		11~ 17층	233,400,000	23,340,000	46,680,000	163,380,000
		18층	263,400,000	26,340,000	52,680,000	184,380,000
077.7942C	72	1층	207,000,000	20,700,000	41,400,000	144,900,000
		2~ 3층	210,000,000	21,000,000	42,000,000	147,000,000
		4층	213,000,000	21,300,000	42,600,000	149,100,000
		5~10층	216,000,000	21,600,000	43,200,000	151,200,000
		11~ 17층	246,000,000	24,600,000	49,200,000	172,200,000
		18층	249,000,000	24,900,000	49,800,000	174,300,000
084.9635B	32	1층	243,000,000	24,300,000	48,600,000	170,100,000
		2~ 3층	246,000,000	24,600,000	49,200,000	172,200,000
		4층	249,000,000	24,900,000	49,800,000	174,300,000
		5~10층	252,000,000	25,200,000	50,400,000	176,400,000
		11~ 17층	255,000,000	25,500,000	51,000,000	178,500,000
		18층	285,000,000	28,500,000	57,000,000	199,500,000
084.9971A	87	1층	235,800,000	23,580,000	47,160,000	165,060,000
		2~ 3층	238,800,000	23,880,000	47,760,000	167,160,000
		4층	241,800,000	24,180,000	48,360,000	169,260,000

		5~10층	244,800,000	24,480,000	48,960,000	171,360,000
		11~ 17층	247,800,000	24,780,000	49,560,000	173,460,000
		18층	277,800,000	27,780,000	55,560,000	194,460,000

■ 주택형의 표시 안내

주택형(㎡)	059.9500E	074.9688D	077.7942C	084.9635B	084.9971A
약식표기	59E	74D	77C	84B	84A

■ 공통 사항

- 상기 주택은 분양 전환한 주택으로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는 세대의 실입주는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만기가 도래된 세입자가 전출한 후 실입주가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 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3.3058 또는 형별면적(㎡)× 0.3025)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E	74D	77C	84B	84A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1	-	1	1	6
	장기복무 제대군인	5	1	1	1	1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1	-	-	4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	1	5

	장애인		2	1	-	1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8	11	7	3	9	5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42	17	11	6	14	90
		일반공급(25%)	13	5	3	2	4	2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8	3	2	2	2	17
생애최초 특별공급	—		19	7	5	3	6	40
합계			124	48	31	19	39	26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다만 일반공급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9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충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

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증평군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6회이상 납입)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 4명 35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17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증평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6회이상 납입)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10%씩 완화 적용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증평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저축 총액이 많은 자. -> ② 저축 총액 많은 자 .로 순차별로 공급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무주택기간(3년여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25% 범위) : 40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증평군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0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0.2.20.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제외함).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증평군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 층별, 향별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 접수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음.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재사용 불가함. - 본 아파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본 아파트를 반드시 방문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공급 1,2순위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기관추천,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주택형	신청구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	전주택형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자(가입 후 경과기간 및 월납입금 납입 횟수와 상관없음)로써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

됨.

3)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등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공유지분 소유 시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아래의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민영주택에 해당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 01. 28. (목)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일반공급	1순위	2021. 01. 29. (금)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 02. 01. (월)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엡스토어에서"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 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4">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table>
<tr><th>구 분</th><th>신청대상자</th><th>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th><th>계약체결</th></tr>
<tr><td>특별공급</td><td>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td><td rowspan="3">• 일시: 2021.02.05.(금)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d rowspan="3">• 일시
2021. 02. 17. (수)
~ 2021. 02. 19. (금)
3일간
(시간 : 10 : 00 ~ 16 : 00)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
(장소: 충청북도 증평군 북부두름길 80 단지 내 상가 2층)</td></tr>
<tr><td rowspan="2">일반공급</td><td>1순위</td></tr>
<tr><td>2순위</td></tr>
</table>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 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jp.verthill.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02. 05 (금) ~ 2021 .02. 14 (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2. 05.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②저축총액이 많은자의 순차로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입주자선정 순차기준에 따라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3년이상 무주택기간인자 중 저축총액이 높은 순서로 선정. 저축총액이 높은 순서로 선정 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

	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있어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받을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6.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1. 02. 17. (수) ~ 2021. 02. 19. (금) 3일간 (시간 : 10 : 00 ~ 16 : 00)	• 충청북도 증평군 북부두름길 80 단지내 상가 2층	062-365-2106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실 제출[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잔금 납부기한
우리은행	1005-202-247663	대성건설 ㈜	잔금: 계약일로부터 30일 납부기한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104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104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계약금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기타 품목 공사비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입금 영수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접수 불가.
		○	주택공급신청서	• 일반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외 (특별공급 신청자만 해당)
일반공급		○	서약서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주민등록표초본(공급신청자 및 부양가족)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 고자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허가건물 재산세 명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장(대리인)	
기타		○	서명확인방식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외 대리인 접수 불가)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6개월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수도권,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 : 1년, 일반지역 : 6개월, 청약위축지역 : 3개월)]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 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1순위자의 경우 각 당첨 구분의 주택소유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당첨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될 경우

■ 분양대금 대출 관련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일정액의 금융기관 융자금이 존재하여 분양 시 매수자에게 대환되어야 하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계약자 본인사정에 의하여 잔금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연체이율은「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로 함

■ 입주예정일 안내

• 입주예정일 : 2021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문고

■ 기타 유의 사항

-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창구청약자: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 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공급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 접수결과 신청자가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 (일반 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정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 (㎡)>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카달로그, 공급간지 등) 의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 (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와 (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행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비행기 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 시설과 인접 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층 호수는 동 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람.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후 (가칭)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며 종 주차대수는 1129대임.
- 단지내의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 (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 (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부대 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함.
- 각 단지변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대지면적에서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로 배분 산정하였음.
- 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학교시설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학생수용이 가능하나 향후 학생수용 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된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저해 시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 기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름.

7. 기타 사항

◉ 기존임차인의 퇴거 일정에 따라 입주일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임차인 및 임대차기간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여부	비고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비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에너지성능지표점수 : 61.4점
◉ 사업주체 : 대성건설(주) / 주소 : 대성건설(주) /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376번길 7 (주월동)
◉ 분양문의 : 062-365-2106 / 충청북도 증평군 북부두름길 80 단지내 상가 2층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정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청약전 본인의 책임으로 별지(첨부)의 임차인 내역 (임대보증금, 월임대료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청약자의 착오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등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첨부 : 각 세대별 임차인 내역 (임대보증금, 국민주택기금, 계약만료일)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감 리 금 액	비 고
건 축 감 리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213,378,100 원	부가세 포함
소 방 감 리	(주)21세기이엔지	₩79,500,000 원	
통 신 감 리	(주)21세기이엔지	₩5,500,000 원	
전 기 감 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426,857,353 원	

◉ 시행자 및 시공자

구분	회사명	주소	등록번호
시행자	대성건설(주)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376번 길 7(주월동)	법인등록번호: 200111-0051444
시공자	대성베르힐건설(주)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233-12, 상가동 201호	법인등록번호: 200111-0144968
	디에스종합건설(주)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18(수기동)	법인등록번호: 200111-0351802

- 580세대 국민주택기금 및 보증금 및 계약만료일 -

순번	동.호	타입	면적	보증금	기금	계약 만료일
1	0101-01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2	0101-01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12-19
3	0101-01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8-20
4	0101-02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5	0101-02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6	0101-03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9-15
7	0101-0304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8	0101-03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1-09
9	0101-04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0	0101-04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8-28
11	0101-04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12-19
12	0101-05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3-01-11
13	0101-05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14	0101-05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1-14
15	0101-06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3-07
16	0101-0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12-22
17	0101-06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8	0101-07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2-24
19	0101-07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20	0101-07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1	0101-08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25
22	0101-08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09-29
23	0101-08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9-30
24	0101-08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5	0101-09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6	0101-09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27	0101-09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24
28	0101-09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0-16
29	0101-10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0	0101-10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12-30
31	0101-10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04
32	0101-1004	59E	59.95	99,000,000	46,000,000	2021-07-20

33	0101-11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4	0101-11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35	0101-11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6	0101-12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1-02
37	0101-12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38	0101-12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9	0101-13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0	0101-13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41	0101-1304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42	0101-13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2-13
43	0101-14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8-11
44	0101-1404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45	0101-15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2-17
46	0101-15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47	0101-16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8	0101-16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49	0101-17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50	0102-01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11-13
51	0102-01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52	0102-01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5-21
53	0102-01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6-19
54	0102-02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8-17
55	0102-02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2-12
56	0102-02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1-26
57	0102-0301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58	0102-03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59	0102-0303	59E	59.95	99,000,000	46,000,000	2021-07-20
60	0102-03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4-28
61	0102-03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62	0102-04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1-22
63	0102-04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64	0102-04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9-27
65	0102-0404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66	0102-05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8-02
67	0102-05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68	0102-05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4-06
69	0102-0505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70	0102-06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71	0102-06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0-15
72	0102-07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13
73	0102-07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2-06-25
74	0102-07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8-27
75	0102-08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76	0102-08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77	0102-09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2-01
78	0102-09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8-15
79	0102-09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7-19
80	0102-10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10-20
81	0102-1003	59E	59.95	99,000,000	46,000,000	2021-07-20
82	0102-10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0-04
83	0102-11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11-25
84	0102-11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3-03-25
85	0102-11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86	0102-11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9-17
87	0102-12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88	0102-12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89	0102-12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5-30

90	0102-1301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91	0102-13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92	0102-13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93	0102-13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94	0102-13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9-09
95	0102-14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96	0102-14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97	0102-14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98	0102-1501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99	0102-15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100	0102-15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01	0102-1505	59E	59.95	140,000,000	46,000,000	2022-10-29
102	0102-16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3-13
103	0102-1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2-06
104	0102-1603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105	0102-16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06	0102-16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07	0102-1701	59E	59.95	140,000,000	46,000,000	2022-12-30
108	0102-17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09	0102-17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10-06
110	0102-1705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111	0102-18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12	0102-18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13	0103-01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6-21
114	0103-01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12-11
115	0103-01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7-22
116	0103-02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17	0103-02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118	0103-02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4-17
119	0103-02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2-21
120	0103-02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3-19
121	0103-03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2-20
122	0103-03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7-21
123	0103-03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4-21
124	0103-0401	59E	59.95		46,000,000	공가세대
125	0103-0402	74D	74.9688		58,000,000	공가세대
126	0103-0403	59E	59.95		46,000,000	공가세대
127	0103-04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28	0103-0405	59E	59.95		46,000,000	2021-07-20

				99,000,000		
129	0103-05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7-09
130	0103-05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3-31
131	0103-05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32	0103-06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3-01-21
133	0103-0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12-20
134	0103-06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35	0103-06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9-26
136	0103-07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37	0103-07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138	0103-07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39	0103-07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2-21
140	0103-08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3-01-14
141	0103-08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4-26
142	0103-08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43	0103-08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44	0103-0901	59E	59.95	140,000,000	46,000,000	2022-12-30
145	0103-09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146	0103-09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47	0103-1001	59E	59.95		46,000,000	2021-12-05

				89,000,000		
148	0103-10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3-30
149	0103-10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50	0103-11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51	0103-11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152	0103-11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8-13
153	0103-11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54	0103-12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55	0103-12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11-19
156	0103-12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57	0103-13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158	0103-13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3-01-01
159	0103-14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60	0103-1402	74D	74.9688		58,000,000	공가세대
161	0103-14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62	0103-14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63	0103-14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5-03
164	0103-15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65	0103-15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166	0103-1503	59E	59.95		46,000,000	2023-02-16

				89,000,000		
167	0103-15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4-02
168	0103-1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3-10
169	0103-16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1-01
170	0103-16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5-14
171	0103-16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11-21
172	0103-17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12-14
173	0103-17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174	0103-17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75	0103-17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6-25
176	0103-18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77	0103-18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78	0104-0102	74D	74.9688	160,000,000	58,000,000	2022-11-19
179	0104-01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80	0104-01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4-28
181	0104-02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3-01
182	0104-02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2-26
183	0104-02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01
184	0104-0205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185	0104-0301	59E	59.95		46,000,000	2021-07-20

				89,000,000		
186	0104-03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9-15
187	0104-03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7-30
188	0104-03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3-26
189	0104-03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90	0104-04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191	0104-04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01
192	0104-05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93	0104-05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1-02
194	0104-05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12-05
195	0104-0601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196	0104-0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6-28
197	0104-06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198	0104-06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9-08
199	0104-07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4-20
200	0104-07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2-15
201	0104-07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3-01
202	0104-0704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203	0104-07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1-26
204	0104-0801	59E	59.95		46,000,000	2022-07-15

				89,000,000		
205	0104-08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2-18
206	0104-08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07	0104-09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208	0104-09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9-10
209	0104-10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210	0104-1003	59E	59.95	140,000,000	46,000,000	2022-11-04
211	0104-10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10-31
212	0104-10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4-12
213	0104-11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5-28
214	0104-11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15	0104-11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07-20
216	0104-11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7-29
217	0104-12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18	0104-12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219	0104-12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2-01
220	0104-1204	59E	59.95	140,000,000	46,000,000	2022-12-28
221	0104-12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22	0104-13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2-27
223	0104-1303	59E	59.95		46,000,000	2021-11-07

				89,000,000		
224	0104-13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3-25
225	0104-13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26	0104-14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27	0104-14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8-27
228	0104-14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29	0104-15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11-07
230	0104-15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31	0104-15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08-26
232	0104-15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1-19
233	0104-1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11-14
234	0104-16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2-03
235	0104-16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36	0104-17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5-05
237	0104-17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238	0104-17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8-17
239	0104-1705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240	0104-18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241	0105-01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09-26
242	0105-0103	77C	77.7942			2022-02-02

				140,000,000	60,000,000	
243	0105-02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5-30
244	0105-02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07-20
245	0105-0203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46	0105-03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09-22
247	0105-03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12-27
248	0105-0303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3-31
249	0105-03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3-13
250	0105-04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10-23
251	0105-0403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52	0105-04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2-20
253	0105-05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254	0105-0503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55	0105-0601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256	0105-0603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07-20
257	0105-07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12-13
258	0105-0703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11-04
259	0105-0704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260	0105-08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1-29
261	0105-0902	74D	74.9688			2022-01-31

				140,000,000	58,000,000	
262	0105-0903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263	0105-09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5-27
264	0105-10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265	0105-1003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11-22
266	0105-11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67	0105-11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09-02
268	0105-1103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69	0105-12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70	0105-12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271	0105-1203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11-30
272	0105-13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2-03-22
273	0105-13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6-04
274	0105-1401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275	0105-14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11-23
276	0105-1403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77	0105-15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78	0105-1503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279	0105-17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280	0105-1703	77C	77.7942			2021-08-22

				130,000,000	60,000,000	
281	0105-17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09-19
282	0105-1803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83	0106-01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84	0106-0103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285	0106-01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4-20
286	0106-02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87	0106-02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288	0106-03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2-03-22
289	0106-0302	74D	74.9688		58,000,000	공가세대
290	0106-0303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91	0106-03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3-01
292	0106-04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12-04
293	0106-04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294	0106-0404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295	0106-0503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12-29
296	0106-0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10-23
297	0106-0603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298	0106-06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1-11
299	0106-0702	74D	74.9688			2021-09-09

				125,000,000	58,000,000	
300	0106-0704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301	0106-08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302	0106-08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303	0106-0803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304	0106-0804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305	0106-09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5-01
306	0106-0903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307	0106-10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07-20
308	0106-1002	74D	74.9688	160,000,000	58,000,000	2022-10-05
309	0106-11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12-13
310	0106-11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311	0106-1103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12-20
312	0106-12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2-11
313	0106-1203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314	0106-14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3-02-04
315	0106-14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316	0106-15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3-03-01
317	0106-15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06-10
318	0106-1503	77C	77.7942			2021-07-20

				130,000,000	60,000,000	
319	0106-1504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07-25
320	0106-16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1-07-25
321	0106-1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06-10
322	0106-17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4-22
323	0106-1703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6-29
324	0106-18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325	0106-18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326	0106-1804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327	0107-01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3-02
328	0107-01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29	0107-01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11-10
330	0107-02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9-03
331	0107-02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32	0107-02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1-22
333	0107-02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34	0107-03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11-03
335	0107-03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1-31
336	0107-03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37	0107-0304	59E	59.95		46,000,000	2021-12-06

				89,000,000		
338	0107-03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39	0107-04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9-07
340	0107-04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6-25
341	0107-0403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342	0107-04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6-17
343	0107-04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1-02
344	0107-05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45	0107-05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46	0107-05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4-16
347	0107-0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4-20
348	0107-0603	59E	59.95	48,010,000	46,000,000	2021-07-20
349	0107-06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07-20
350	0107-06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7-28
351	0107-07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27
352	0107-07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353	0107-07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54	0107-07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5-07
355	0107-07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6-19
356	0107-0804	59E	59.95		46,000,000	2022-09-21

				120,000,000		
357	0107-0805	59E	59.95	140,000,000	46,000,000	2022-12-30
358	0107-09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359	0107-09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7-23
360	0107-09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61	0107-10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9-15
362	0107-10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363	0107-10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64	0107-10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65	0107-11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366	0107-11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8-31
367	0107-11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68	0107-12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69	0107-12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370	0107-12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71	0107-12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72	0107-12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9-10
373	0107-13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7-23
374	0107-13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375	0107-1303	59E	59.95		46,000,000	2021-07-20

				89,000,000		
376	0107-13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3-09
377	0107-13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3-30
378	0107-14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13
379	0107-1402	74D	74.9688	160,000,000	58,000,000	2022-11-09
380	0107-14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81	0107-14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82	0107-15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7-30
383	0107-15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384	0107-1503	59E	59.95	140,000,000	46,000,000	2022-11-17
385	0107-1504	59E	59.95	140,000,000	46,000,000	2022-10-25
386	0107-1602	74D	74.9688	160,000,000	58,000,000	2022-12-03
387	0107-16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3-22
388	0107-16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07
389	0107-16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90	0107-17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2-25
391	0107-17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92	0107-17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2-06
393	0107-17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7-28
394	0107-1804	59E	59.95		46,000,000	2021-07-20

				89,000,000		
395	0107-18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96	0108-01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2-02-20
397	0108-01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398	0108-0104	59E	59.95	10,000,000	46,000,000	2021-07-20
399	0108-02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2-13
400	0108-02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01	0108-0205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4-02
402	0108-03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03	0108-03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04	0108-04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2-21
405	0108-04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406	0108-04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2-21
407	0108-04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06-04
408	0108-05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7-28
409	0108-05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06-10
410	0108-05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07-20
411	0108-06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3-26
412	0108-06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1-06-10
413	0108-0603	59E	59.95		46,000,000	2021-07-20

				89,000,000		
414	0108-06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15	0108-07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3-02-19
416	0108-07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11-20
417	0108-07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11-28
418	0108-07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8-01
419	0108-08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11-24
420	0108-0802	74D	74.9688	140,000,000	58,000,000	2023-03-21
421	0108-08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1-07-24
422	0108-0805	59E	59.95	99,000,000	46,000,000	2021-07-20
423	0108-0901	59E	59.95	99,000,000	46,000,000	2021-08-13
424	0108-09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425	0108-09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26	0108-1001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2-11
427	0108-1002	74D	74.9688	125,000,000	58,000,000	2021-07-20
428	0108-10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29	0108-10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30	0108-11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31	0108-1202	74D	74.9688	160,000,000	58,000,000	2022-10-29
432	0108-1203	59E	59.95		46,000,000	2021-07-20

				89,000,000		
433	0108-12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34	0108-13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35	0108-1303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3-02-04
436	0108-13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3-02-04
437	0108-14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438	0108-14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39	0108-1404	59E	59.95	120,000,000	46,000,000	2022-09-04
440	0108-1502	74D	74.9688	130,000,000	58,000,000	2021-07-20
441	0108-15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2-10-25
442	0108-1601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43	0108-1602	74D	74.9688	10,000,000	58,000,000	2021-07-20
444	0108-16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45	0108-1605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46	0108-1701	59E	59.95	140,000,000	46,000,000	2022-11-11
447	0108-1702	74D	74.9688	160,000,000	58,000,000	2022-10-29
448	0108-1703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49	0108-1704	59E	59.95	89,000,000	46,000,000	2021-07-20
450	0109-0302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451	0109-0702	77C	77.7942			2022-12-09

				130,000,000	60,000,000	
452	0109-0901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3-03-04
453	0109-10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454	0109-1102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455	0109-12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456	0109-1202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457	0109-1301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458	0109-1501	77C	77.7942	130,000,000	60,000,000	2021-07-20
459	0109-1502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460	0109-1702	77C	77.7942	140,000,000	60,000,000	2022-03-15
461	0109-1801	77C	77.7942	125,000,000	60,000,000	2021-07-20
462	0110-01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2-05-31
463	0110-01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2-01-13
464	0110-01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65	0110-0201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1-10-10
466	0110-02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67	0110-0203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4-22
468	0110-0204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69	0110-03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70	0110-0304	84A	84.9971			2021-07-20

				130,000,000	67,000,000	
471	0110-04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8-09
472	0110-05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73	0110-05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74	0110-06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1-07-20
475	0110-08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2-10-21
476	0110-0803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77	0110-09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78	0110-09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79	0110-1004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80	0110-12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10-30
481	0110-12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82	0110-13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83	0110-1304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84	0110-14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85	0111-01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86	0111-02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87	0111-02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88	0111-02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89	0111-0304	84A	84.9971			2022-06-01

				160,000,000	67,000,000	
490	0111-0401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1-07-20
491	0111-04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92	0111-05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93	0111-05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94	0111-06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495	0111-06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96	0111-0604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97	0111-07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98	0111-07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499	0111-0801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5-14
500	0111-08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01	0111-08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10-22
502	0111-0904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03	0111-10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04	0111-11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05	0111-12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06	0111-12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07	0111-12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08	0111-1302	84B	84.9635			2021-07-20

				130,000,000	67,000,000	
509	0111-1401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3-01-26
510	0111-1403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11	0111-15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12	0111-17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13	0111-17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7-09
514	0111-18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15	0111-18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2-05-02
516	0112-01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1-07-20
517	0112-01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18	0112-0201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11-22
519	0112-0203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9-17
520	0112-0301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1-11-14
521	0112-03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2-03-15
522	0112-0303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8-31
523	0112-03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1-09-29
524	0112-04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25	0112-0501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12-22
526	0112-05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2-06-11
527	0112-0503	84A	84.9971			2021-07-20

				130,000,000	67,000,000	
528	0112-05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29	0112-06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30	0112-0702	84B	84.9635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31	0112-07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32	0112-08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33	0112-0803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34	0112-08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10-14
535	0112-0901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12-22
536	0112-0903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37	0112-10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2-06-23
538	0112-1003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39	0112-11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6-10
540	0112-12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6-03
541	0112-13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42	0112-1302	84B	84.9635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43	0112-13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8-26
544	0112-14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2-11-12
545	0112-1403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4-02
546	0112-1404	84A	84.9971			2022-04-27

				130,000,000	67,000,000	
547	0112-16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48	0112-16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9-15
549	0112-17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50	0112-17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51	0112-17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8-10
552	0113-0101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4-16
553	0113-01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1-08-12
554	0113-01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7-06
555	0113-02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56	0113-02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1-11-21
557	0113-02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58	0113-03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59	0113-0302	84B	84.9635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60	0113-04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61	0113-0404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8-06
562	0113-0501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63	0113-05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64	0113-0602	84B	84.9635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65	0113-0604	84A	84.9971			2021-07-20

				130,000,000	67,000,000	
566	0113-07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67	0113-08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68	0113-0802	84B	84.9635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69	0113-09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70	0113-0903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71	0113-0904	84A	84.9971	140,000,000	67,000,000	2021-07-20
572	0113-1003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73	0113-1104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74	0113-1202	84B	84.9635	140,000,000	67,000,000	2021-09-26
575	0113-13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76	0113-1302	84B	84.9635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77	0113-1501	84A	84.9971	130,000,000	67,000,000	2021-07-20
578	0113-1502	84B	84.9635	160,000,000	67,000,000	2022-05-01
579	0113-1503	84A	84.9971	160,000,000	67,000,000	2022-08-13
580	0113-1702	84B	84.9635	130,000,000	67,000,000	2021-07-20